

[별표 2] <개정 2008.12.31>

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(제5조 관련)

구 분	범 위
공공단체	1. 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. 「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. 「전통사찰보존법」 제3조에 따라 지정·등록된 전통사찰 6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(의료법인에 한정한다) 7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5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
농업생산자단체	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.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4. 「축산법」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
농업연구기관	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·자재 등의 개발·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
종자생산자	「종자산업법」 제1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사업자 및 그 단체
농업기자재의 생산자	1.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. 「농약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및 그 단체 3.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

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